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방안 연구

유영민

2013-PR-55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방안 연구

연구진

연구책임	유영민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정책기획실장
연구원	김승순	(사)생명의숲국민운동 팀장
	최승희	(사)생명의숲국민운동 활동가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의 개요

1.1 배경 및 목적

- 높은 도시화율에 따른 생활환경 악화로 도심 내 생활권 도시공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시공원은 도시의 환경적 기능뿐 아니라 도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인식된다. 또한 시민들에게 도시공원은 역사, 문화체험, 교육, 일자리, 치유, 커뮤니티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 1960~70년대 지정 후, 조성되지 않은 공원에 대해 소유자들의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2020년까지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 실효하게 된다.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은 90% 이상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 실효시 서울시민의 삶의 질 저하와 도시의 그린인프라가 붕괴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 이 연구의 목적은 2020년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의 자동실효에 대한 시민 사회 내 인식정도 파악과 사례조사를 통해 시민사회의 공원일몰제에 대한 대응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시민사회 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1.2 내용 및 방법

- 기존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대한 현황을 조사했으며, 국내 민간분야의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대응

사례조사를 통해 기존 대응 활동을 검토하였다.

- 서울시 내 민간단체 중 공원·녹지를 주요한 활동공간으로 삼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하고 국토교통부, 산림청, 서울특별시 담당자를 면접조사 하였다.
-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활동계획이 있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 대상으로 3차례 워크숍을 진행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시민사회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2 주요 연구 결과

2.1 서울시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현황

서울시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집행률은 49.96%다. 서울시의 집행률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여의도의 7배에 달할 만큼 많은 면적이 미집행으로 남아 있다. 2020년 자동실효시 서울이라는 지역적 특성, 미집행 공원 중 70% 이상이 근린공원이라는 점, 약 40% 이상이 사유지임을 감안했을 때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대한 개발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이는 극심한 도시숲의 훼손 및 감소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말해주며, 또한 소유주에 의한 이용제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2.2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국내 민간단체 대응 사례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국내 민간분야 대응사례로는 광주중앙공원시민네트워크 사례와 국가도시공원 인천민관네트워크 사례가 있다. 광주중앙공원시민네트워크는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내 특급호텔 추진 관련 현안에 대한 활동이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대응활동으로 발전된 사례다. 국가도시공원 인천민관네트워크는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논의 중 장기

미집행도시공원 사안이 포함되어 논의된 사례이다. 민간에서는 연구 사업에 연구진으로 참여한 적은 있지만, 아직까지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사안만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례는 없다. 하지만 광주와 인천 사례를 통해 지역 중심으로 접근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2.3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기관면접조사

국토교통부, 산림청, 서울특별시 담당자를 면접조사 했다. 1960~70년대 공원지정 및 관리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었으나, 1990년대 지방자치체가 시행되면서 지자체의 업무로 이관되었다. 면접을 통해 알아보니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은 현재 업무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응이 어렵고, 서울특별시는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여건과 민원 등 행정여건상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2.4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인식조사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단체 인식조사 결과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인지여부는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시민사회 내 대응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했다. 대응활동방법은 제도개선 및 연구 활동, 캠페인, 트러스트 활동 순으로 응답했으며 제도개선 및 연구 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높게 나타났다.

2.5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방안 워크숍 결과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워크숍을 통해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갖게 되었으며 시민사회단체 내 연대활동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다. 시민사회 내 공감대를 높이는 활동과 구체적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현장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주민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며, 여론

을 형성해가는 활동이 주요 대응방안으로 제시되었다.

26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방안

- 2020년까지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도시공원시민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운영한다.
-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시민단체 활동가 대상 학습 및 교육을 통해 단체 활동가부터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 시민들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시공원의 집행여부나 2020년 자동 실효시 발생할 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에게 본 현안에 대해 알리고, 지역중심의 활동사례를 만들어 간다.
- 지역의 도시공원이 2020년 자동실효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게 되며 또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연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3 정책건의

31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문제를 담당할 부서 설치 및 담당자 배치

서울시의 도시공원은 도시기반시설로 도시계획국의 시설계획과에 속해 있지만, 실제 담당은 푸른도시국의 공원녹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현재 분할된 체계는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대한 업무와 담당이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고 책임과 권한이 분명하지 않은 체계이다. 이에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문제를 담당할 부서와 담당자를 명확하게 지정해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네트워크 구성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대해 지자체가 업무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많은 연구를 통해 다양한 해결책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제시된 해결방안 실현을 위해서는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 토지소유자, 지자체(업무에 따른 부서 영역)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이해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지금까지 행정, 학계, 시민단체, 토지소유자, 이용자 등이 분산되어 논의를 진행해 왔다면, 앞으로 2020년까지 한시적이더라도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대한 대안을 함께 마련해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대안을 모색해 갈 수 있는 민관네트워크를 운영해야 한다.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문제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 기반 구축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관한 사안은 행정만의 역할로 풀기 어렵다. 시민들의 공감대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기금모금, 트러스트 운동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시공원 문제에 시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차례

I	연구의 개요	1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1 1	연구의 배경	14
1 2	연구의 목적	15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2 1	연구의 내용	16
2 2	연구의 방법	16
II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현황	20
1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개요	20
1 1	배경	20
1 2	발생원인	20
1 3	전국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현황	21
1 4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문제점	22
2	서울시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현황	22
2 1	면적 현황	23
2 2	공원 유형별 현황	23
2 3	용도지역 현황	23
2 4	소유현황	23
2 5	지목현황	23
III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국내 대응사례 및 기관면접	26
1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국내 민간분야 대응사례 조사	26
1 1	광주중앙공원시민네트워크	26

1 2	국가도시공원 인천민관네트워크	28
2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기관면접조사	29
2 1	면접 개요	30
2 2	면접 내용	30
IV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인식조사 및 대응방안 워크숍	34
1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인식조사	34
1 1	조사개요	34
1 2	조사결과	36
2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방안 워크숍	40
2 1	워크숍 개요	40
2 2	주요 내용	42
V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방안	46
1	시민사회 대응활동 배경 및 목표	46
2	시민사회 대응 활동 방향	46
3	시민사회 대응 활동방안 제안	47
VI	결론 및 정책건의	52
1	결과요약	52
2	정책건의	55
	참고문헌	58
	부 록	59

표차례

표 2-1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관련 조항	20
표 2-1	전국 도시공원 현황(2012년말 기준)	21
표 4-1	설문 대상 단체	34
표 4-2	응답자 특성	36
표 4-3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인지정도	37
표 4-4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대응 활동 경험	37
표 4-5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향후 활동 계획	38
표 4-6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시민사회 대응활동의 중요성	38
표 4-7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대응 활동 계획 여부	39
표 4-8	시민사회 대응활동 중요성	40
표 5-1	시민대상 공원프로그램 내용	48

그림차례

그림 1 시민사회 대응방안 워크숍 모습

42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1.1.1 높은 도시화율과 생활환경 악화에 따른 생활권 도시공원 수요 증가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전체 인구의 약 90%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의 생활환경은 날로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시공원은 도시 내 기후변화 완화, 소음감소, 대기정화 기능 등 환경적 역할을 담당한다. 그뿐 아니라 도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공원은 역사, 문화체험, 교육, 일자리, 치유, 커뮤니티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도시민의 도시공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1.2 2020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자동실효에 따른 도시공원 해제 위기 도래

도시공원은 철도, 도로 등과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로 도시계획시설 설치 절차에 따라 조성된다. 1970~80년대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되고 설치되는 과정에서 지정 후 조성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들이 발생했다. 지정된 시설에 대해 조세부과, 행위제한 등이 이루어지자 소유자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게 되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사유재산 침해와 관련된 도시계획시설 지정의 헌법 불일치 판결에 따라 2000년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장기간 미 집행된 상태로 남아 있는 공원은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하게 된다.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은 전체 면적 1,4453.79km² 중에서 861.04km²를 차지하여 59.5%에 이른다. 미집행공원은 다른 시설에 비해 넓은 면적을 지니고 있어 초기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토지보상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며, 이로 인한 재정적 부담으로 지자체에서는 집행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1.1.3 서울시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자동실효에 따른 문제점

서울시 미집행도시공원은 전체 도시공원 2,068개소 중 119개소, 미집행 면적은 전체 43.7km² 중 27.98km²로 약 50%에 이른다. 미집행공원의 지목 중 임야가 80.7%를 차지해 2020년 자동 실효시 심각한 도시숲의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미집행도시공원 119개소 중 근린공원이 88개소를 차지함으로써 생활권에서 이용가능한 도시공원이 줄어들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 서울연구원의 연구 결과, 2020년 자동실효시 서울시 1인당 공원면적은 4.35m²/인에서 2.72m²/인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며 공원서비스 소외면적은 21.47km²(3.55%)에서 41.45km²(6.85%)로 증가될 수 있어 지역별 삶의 질의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0년 자동실효에 따라 소유주들의 도시공원의 출입 금지시 시민들이 등산로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1.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2020년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의 자동실효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을 파악하고 대응 사례를 조사하여, 향후 도시공원일몰제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대응방안을 찾는 것이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1 연구의 내용

- 기존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현황을 정리하였다.
- 국내 민간분야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사례를 조사하고 검토하였다.
- 서울시 내 민간단체 중 공원·녹지를 주요한 활동공간으로 삼고 있는 단체 대상으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인지도, 대응 필요성, 참여의지 등을 조사하였다.
- 도시공원과 관련 있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산림청의 담당자와의 면접조사를 통해 기관별 입장을 파악하였다.
-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활동계획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3차례 워크숍을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2.2 연구의 방법

2.2.1 자료조사

-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현황조사
- 국내외 민간분야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사례 조사
- 서울시 내 공원·녹지 등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현황 조사

2.2.2 설문 및 면접조사

- 서울시 내 공원·녹지 등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기관 면접조사

223

워크숍

- 시민단체 중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활동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중인 단체 대상 의견 수렴 및 대응방안 논의

II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현황

- 1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개요
- 2 서울시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현황

II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현황

1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개요

1.1 발생배경

1970~80년대 지정 후 조성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조세부과 및 행위제한이 있자, 거주자 및 소유자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사유재산 침해와 관련된 도시계획시설 지정의 헌법불일치 판결이 나면서 2000년 개정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장기간 미 집행된 상태로 남아 있는 공원은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하게 된다.

표 2-1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관련 조항

법 률 조 항	주 요 내 용
제48조 [전문개정 2009.2.6]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제16조 [전문개정 2009.2.6]	① 이 법은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부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의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가산일의 기산일은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 2. 2000년 7월 2일 이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

1.2 발생원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자체의 집행예산 부족으로 인한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크다. 그 중 공원

및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중 가장 많이 결정되는 시설로 규모 및 비용이 크기 때문에 미집행비율이 높다.

13 전국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현황

2012년 말 기준 전국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은 1,900,996,361㎡ 으
 로 이 중 497,077,776㎡이 집행되었으며, 미집행면적은 1,403,918,585
 ㎡로 도시계획시설의 집행비율은 26.15%밖에 되지 않는다. 이 중 도시
 공원 결정면적은 735,713,979㎡인데 집행면적은 127,638,933㎡로 집
 행률은 17.35%밖에 되지 않으며 미집행도시공원 면적은 608,075,580
 ㎡으로 여의도 면적(8.35km²)의 약 72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표 2-2 전국 도시공원 현황(2012년말 기준)

행정구역	결정면적(㎡)	집행면적(㎡)	미집행면적(㎡)	집행비율(%)	추정사업비계 (백만원)
서울특별시	113,868,204	56,882,972	56,985,232	49.96	2,161,988
경기도	83,942,800	4,207,444	79,735,356	5.01	16,129,391
강원도	35,134,297	2,688,536	32,445,761	7.65	2,188,513
충청북도	42,657,582	1,105,345	41,552,237	2.59	1,738,807
충청남도	42,309,500	4,067,596	38,241,904	9.61	3,035,836
전라북도	43,649,079	9,050,473	34,598,606	20.73	2,566,195
전라남도	54,230,371	3,116,049	51,114,322	5.75	2,639,205
경상북도	61,029,867	6,276,342	54,753,525	10.28	2,379,970
경상남도	68,447,576	4,983,016	63,464,560	7.28	4,118,821
제주도	13,065,545	1,980,405	11,085,140	15.16	819,275
세종특별자치시	821,414	21,842	799,572	2.66	91,742
광주광역시	12,276,393	1,305,201	10,971,192	10.63	2,916,030
대구광역시	19,584,577	6,134,479	13,450,098	31.32	1,804,790
대전광역시	17,562,780	5,074,279	12,488,501	28.89	559,501
부산광역시	51,806,115	10,142,620	41,663,495	19.58	4,978,295
인천광역시	47,073,380	6,339,182	40,734,198	13.47	2,265,751
울산광역시	28,254,499	4,262,618	23,991,881	15.09	2,167,805
총합	735,713,979	127,638,399	608,075,580	17.35	52,561,915

1 4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문제점

1 4 1 개발압력 상승으로 인한 도시공원의 감소 및 훼손

서울시 도시공원은 지정 용도 중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가 53.8%이며, 대부분이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때문에 도시공원 해제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도시공원의 감소 또는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1 4 2 도시민의 삶의 질 악화 예상

2020년 자동실효시 서울시 1인당 공원면적은 $4.35\text{m}^2/\text{인}$ 에서 $2.72\text{m}^2/\text{인}$ 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원서비스 소외면적은 21.47km^2 (3.55%)에서 41.45km^2 (6.85%)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역별 삶의 질 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또한 대규모 근린공원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해제시 출입 및 이용에 제한이 발생하게 될 경우 도시민의 여가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서울시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현황¹

서울시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집행률은 49.96%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높지만, 여전히 여의도의 7배에 달할 정도로 넓게 분포하고 있다. 자동 해제 시 서울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했을 때 극심한 도시숲의 훼손 및 감소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약 70% 이상이 근린공원이고, 46% 정도가 사유지임을 감안할 때 자동실효시 개발압력이 높아져 도시공원 이용 공간이 감소할 수 있으며, 소유주들에 의한 도시공원 이용제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 “미집행도시계획시설재정비계획” 서울시 보고서 발췌

면적 현황

2012년 말 기준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은 123,175,980㎡으로 이 중 58,312,375㎡이 집행되었으며, 미집행면적은 64,863,605㎡로 도시계획시설의 집행비율은 47.34%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높지만 여전히 50%에 이르지 못한다. 이 중 도시공원 결정면적은 113,868,204㎡이며 집행면적은 약 49.96%인 56,882,972㎡이다. 하지만 여의도 면적(8.35km²)의 약 7배에 달하는 56,985,232㎡ 면적이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다.

공원유형별 현황

미집행 도시공원은 전체 도시공원 2,068개소 중 119개소로, 근린공원이 88개소, 어린이공원 20개소, 소공원 8개소 순이다.

용도지역 현황

미집행 공원시설의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 53.8%로 가장 높고 녹지지역은 45.7%에 그치고 있다.

소유현황

미집행공원의 소유현황은 사유지가 46%, 국유지가 19%, 공유지는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목현황

미집행공원의 지목은 임야 80.7%, 공원 5.7%, 대지 3.2% 순으로 나타났다.

Ⅲ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국내 대응사례 및 기관 면접조사

1.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국내 민간단체 대응사례 조사
2.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기관면접조사

III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국내 대응사례 및 기관 면접조사

1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국내 민간분야 대응사례 조사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국내 민간분야 대응 사례로는 광주중앙공원 시민네트워크 사례와 국가도시공원 인천민관네트워크 사례가 있다. 광주중앙공원시민네트워크는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내 특급호텔 추진 관련 현안에 대한 활동이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대응 활동으로 발전된 사례이다. 국가도시공원 인천민관네트워크는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논의 중 장기미집행도시공원으로 인한 도시민의 도시공원 부족 문제가 포함되어 논의된 사례이다. 민간에서는 연구진으로 참여해 연구활동에 참여한 사례는 있었지만,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사안만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1.1 광주중앙공원시민네트워크

1.1.1 개요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내 특급호텔 추진관련 현안에 대한 활동이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대응활동으로 발전한 사례다. 광주 중앙공원은 행정의 손쉬운 개발대상지로 광주시에서는 2005년 특급호텔 건립, 2009년 유스호스텔 건립, 2013년 양궁장설치 등을 추진했으나 시민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변경 또는 저지됐다.

2005년 이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2012년에는 중앙공원을 무대로 지속적 시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광주중앙공원시민네트워크가 발족했다. 광주중앙공원시민네트워크에서는 광주 중앙공원의 조성을 위해 장

기미집행도시공원, 공원일몰제에 관해 논의하고, 지역의 여론을 형성해 가는 활동을 하고 있다.

112 구성 단체

광주중앙공원시민네트워크는 교육문화공동체, 광주생명의숲, 광주시 민센터 서구지부, 광주앞산뒷산네트워크,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전남녹 색연합, 광주전남숲해설가협회, 광주환경운동연합, 금당산지킴이, 무 등산풍경소리, 서구청년회, 어린이도서관아이숲, 중앙공원을사랑하는 사람들의모임 등 총 13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113 경과

시 기	경 과
2005 ~2006	·광주시 중앙공원 내 특급호텔 추진 ·중앙공원 특급호텔 건립 반대 공동대책위 구성 ·반대운동 진행 및 건립계획 백지화
2009	·광주시 중앙공원 내 유스호텔 타당성 용역 추진 ·중앙공원유스호텔 반대 대책위 결성 ·청소년수련시설 타당성 용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유스호텔 건립 반대활동 : 주민서명, 기자회견, 시민참여행사 개최 ·중앙공원 조성계획 재수립 요구 토론회 및 발대식(12월)
2010	·중앙공원 조성계획 재수립 요구 활동 : 주민서명, 광주시장 후보자 중앙공원에 대한 입장 공개질의, 광주시의회 청원
2011	·중앙공원 조성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 방침 결정 ·중앙공원 조성계획 재정비 기본계획(안) 현상 설계 공모 관련 자문회의 : 시민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방안 모색
2012	·국가공원 법제화 및 조성을 위한 국가공원 민관네트워크 추진 워크숍 진행 ·중앙공원 조성계획 변경수립 용역 착수 ·중앙공원시민잔치 및 광주중앙공원시민네트워크 발족(9월) ·중앙공원시민네트워크 회의 7회 진행 : 재수립용역, 국가공원법 법제화 논의
2013	·광주시 중앙공원 남단 양궁장 설치 계획 추진 ·양궁장 현장답사를 통해 광주시와 양궁장입지 논의와 네트워크 제안서 전달 ·광주시 양궁장 시민네트워크 제안 범위내에서 입지 변경 ·중앙공원 시민잔치 진행 ·‘공원, 일몰제 광주의 대책과 전망은?’ 토론회 진행 ·광주 환경예산 모니터링 및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 대비 촉구

12 국가도시공원 인천민관네트워크

121 개요

인천 내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활동 중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현안이 포함되어 논의된 사례다.

국가도시공원 전국 민관네트워크는 2013년 6월 광주에서 발족했으며, 이에 인천 지역에서도 인천민관네트워크 결성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 2013년 10월 발족되었다.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시민휴식공간인 도시공원 조성에 국가의 역할과 책임 부분에 대한 대시민 홍보 및 여론 조성활동,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청원활동, 국가도시공원 추진 전국네트워크 및 도시별 네트워크와의 교류, 협력 연대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 중에 있다.

122 구성 단체

국가도시공원 인천민관네트워크는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천주교인천교구가톨릭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생협협의회, 인천여성민우회,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교조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천주교사제모임, 주거복지센터, 인천비정규직노동센터, 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YMCA, 인천YWCA, 인천여성단체협의회, 인천전문건설조경협의회 등 총 19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123 경과

시 기	경 과
2013.8.1	· 인천민관네트워크 결성을 위한 1차 기획회의 · 국가공원 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시 기	경 과
2013.8.14	· 인천민관네트워크 결성을 위한 2차 기획회의 - 국가공원 추진 인천민관네트워크 결성 논의
2013.8.27	· 인천민관네트워크 결성을 위한 3차 기획회의 - 국가공원 추진 인천민관네트워크 결성 및 발족식 논의
2013.9.6	· 인천민관네트워크 결성을 위한 4차 기획회의 - 국가공원 추진 인천민관네트워크 결성 및 발족식 논의
2013.9.26	· 인천민관네트워크 결성을 위한 5차 기획회의 - 국가공원 추진 인천민관네트워크 진행과정 점검
2013.10.15	· 인천민관네트워크 결성을 위한 6차 기획회의 - 국가공원 추진 인천민관네트워크 진행과정 최종 점검
2013.10.31	· 국가공원 추진 인천민관네트워크 발족식 및 전국네트워크 토론회

1 2 4

향후 활동 계획

국가도시공원 인천민관네트워크에서는 향후 국가도시공원 관련 법 제·개정 청원활동, 전국민관네트워크 협력, 연대 방안 구축, 부평미군기지의 국가도시공원화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2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기관 면접조사

도시공원은 1960~70년대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로 중앙정부에서 지정·관리해 왔다. 1960~70년대에는 조성보다 지정에 급급했으며, 양적 확대에 주력해 왔다. 1990년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이관되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은 대부분 1960~70년대 지정 후 조성되지 않은 공원이자, 이와 관련해 1960~70년대 관할권을 가지고 있던 국토교통부와 현재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특별시를 면접했다. 서울특별시는 도시계획시설업무를 총괄하는 시설계획과와 공원조성을 담당하는 공원조성과를 면접했다. 또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의 면접을 통해 기관 입장을 확인했다.

기관면접 결과 국토교통부, 산림청은 현재 권한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서울특별시는 재정 및 행정여건 상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2.1 면접개요

기관명	면담부서	일 시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녹지공원과	2013년 11월 8일	- 주요업무범위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2013년 10월 22일	-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현황
	시설계획과	2013년 11월 6일	- 문제 및 해결방안 - 해결우선순위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2013년 10월 18일	

2.2 면접내용

2.2.1 국토교통부

- 2005년 법개정 당시 추진한 시범사업이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진행되지 못했으나 그 당시 도시공원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부족이며, 이 상황에서 소규모 지원은 가능하겠지만, 큰 예산의 집행은 어려운 상황이다.
-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집행에 대한 법적인 권한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업무가 지자체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행정 활동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의 토지보상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및 국회 논의를 통한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공원일몰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지 못하고, 보상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

서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 2020년 자동실효시에 난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져 1차 훼손을 막기 어렵고 산림법 등 타법에 의한 개발제한요소가 있다고 하지만, 난개발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등산로의 경우 이용제한이 될 경우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도시공원일몰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2020년이라는 시간제한을 감안하여 모든 부처가 협력하여 문제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2.2.2 서울특별시

- 서울시는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부지를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보상을 통해 매입하고 있으나 세수 감소와 사회복지 지출 증가에 따라 2020년까지 보상을 통한 완전한 문제해결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 전국 광역, 지자체 과장들이 모여 전국공원녹지협의회를 만들어 국토교통부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요청하고, 예산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 서울시에서는 자동실효시에 서울시의 미집행도시공원의 특성상 개발육구 상승과 이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난립이 우선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에 보상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해결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2.2.3 산림청

-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되어 있는 도시숲의 범주 안에서 조성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산림청은 공원구역의 지정에 관계 없이 나무를 심고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며, 나무, 숲 등 지상물에 한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은 토지구역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산림청과 무관한 업

무로 인식하고 있다.

- 지자체가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할 경우 산림청에서 조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토지 확보를 위한 매입은 산림청이 할 수 없는 업무로 인식하고 있다.
- 산림청의 업무가 시·군·구로 내려오면 공원, 녹지를 담당하는 실행부서에서 진행하게 되어 지자체의 도시공원업무와 같아 보이지만, 산림청의 업무는 주로 「산림자원 및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지자체의 도시공원 업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게 된다. 법률체계가 다른 상황에서 산림청에서 도시공원에 관한 업무에 관여하기는 어렵다.

IV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인식조사 및 대응방안 워크숍

1.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인식조사
2.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방안 워크숍

IV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인식조사 및 대응방안 워크숍

1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인식조사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단체 인식조사 결과,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인지여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시민사회에서의 대응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활동 방법에 대해 제도개선 및 연구 활동, 캠페인, 트러스트 활동, 현장 조성 활동 등의 순으로 의견이 나왔으며, 주로 제도개선 및 연구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높게 나타났다.

1.1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3년 11월 ~ 2014년 1월
- 조사방법 : 온라인조사
- 대 상 : 서울특별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중 공원, 도시, 녹지 등 관련 활동 단체와 한국환경회의 소속단체 중 서울에 소재한 단체 중 38개 단체
- 주요내용 :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인지여부, 대응활동 필요 정도, 향후 참여 계획, 시민사회 대응 방법 등

표 4-1 설문 대상 단체

순번	단 체 명	소 재 지(주 소)
1	(사)녹색연합	서울 성북구 성북2동 113-34
2	(사)생태지평	서울 마포구 연남동 561-60 2층
3	(사)환경정의	서울 마포구 성산1동 249-10 나무건물 1층 환경정의
4	(재)녹색미래	서울 마포구 마포동 236-1 덕성빌딩 B1층

순번	단 체 명	소 재 지(주 소)
5	(재)서울그린트러스트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85-278 녹색공유센터
6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4 미주플라자 204호
7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서울 강동구 성내3동 428-5 오스카상가 202호
8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서울 강서구 등촌1동 NGO센터 3층
9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서울 중구 정동 15-5 정동빌딩
10	관악산숲가꿈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 1510-45 공원관리사무소 2층
11	광진시민연대	서울 광진구 구의동 405-12
12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한국조류연구소 내
13	금천도시농업네트워크	서울 금천구 가산동 769 두산위브아파트 상가 304호
14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서울시 종로구 지하문로 1나길 7-13
15	녹색교통운동	서울 마포구 성산동 249-10 시민공간나루4층
16	녹색미래연대	서울 관악구 봉천동 869-10 관악센츄리타워 13층
17	녹색법률센터	서울 성북구 성북2동 113-34
18	(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서울 종로구 당주동 세종빌딩 908호
19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서울 노원구 공릉동 375-1 4층
20	불교환경연대	서울 종로구 견지동 39-1 조계사신도회관 402호
21	불암산사람들	서울 노원구 상계동 76-9 재원빌딩 B1
22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서울 종로구 익선동 30-6 운현신화타워빌딩 1층 102호
23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 은평구 진관동 302-6
24	서울도시농업네트워크	서울 마포구 연남동 487-366 대원빌딩 2층
25	송파시민연대	서울 송파구 석촌동 297-2 성창빌딩 304호
26	숲지기강지기	서울 동작구 대방동 345-1 서울여성플라자 4층 NGO센터
27	시민환경연구소	서울 종로구 누하동 251
28	एको붓다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85-16호
29	여성환경연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59 여성미래센터 2층 201호
30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서울 양천구 신정동 144-35
31	텃밭보급소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4-23 4층
32	한국YMCA연맹	서울 중구 명동 1가 1-3
33	한국YWCA연합회	서울 중구 소공동 117번지 1층
34	환경과공해연구회	서울 용산구 동자동 43-9 3층
35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49-1 현대플라자 201호
36	환경문화연대	서울 중구 태평로2가 69-11 영복빌딩 601호
37	환경사회책임연구소	서울 마포구 용강동 67-1 인우빌딩 5층
38	환경운동연합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23

조사결과

- 서울에 소재한 38개 단체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응답한 단체는 17개 단체로 회수율은 44.7% 였다.
- 응답 단체 중 (사)건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실현도시개혁센터, 녹색연합, 녹색미래, 서울그린트러스트, (사)생태지평연구소,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등 총10개 단체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녹색미래연대, 관악산숲가꿈이,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여성환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숲지기강지기 7개 단체는 들어본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 설문은 사무처장 7명, 사무국장 2명, 팀장 1명, 기타(대표, 운영위원 등) 7명이 응답했으며 단체 규모는 20인 이상이 5개로 가장 많았으며, 5인 이내 4개, 10인 이내 4개, 15인 이내 3개로 나타났다.

표 4-2 응답자 특성

구	분	사례수 / 응답수
특성	전체	38 / 17(44.7%)
인지여부	들어본 적이 있다.	10
	들어본 적이 없다.	7
직책	사무처장	7
	사무국장	2
	팀장	1
	기타(대표, 운영위원 등)	7
단체규모	20인 이상	5
	15인 이내	3
	10인 이내	4
	5인 이내	4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

- 1)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인지 정도
 ‘매우 잘 알고 있다’는 3명(30%), ‘잘 알고 있다’는 3명(30%), ‘보통이다’는 4명(40%)이 응답했다.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이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3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인지정도

인지여부	사례수	응답율(%)
전체	10	100
매우 잘 알고 있다	3	30
잘 알고 있다	3	30
보통이다	4	40
잘 모른다	-	-
아주 모른다	-	-

- 2)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대응 활동 경험
 4명(40%)이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6명(60%)이 ‘없다’고 응답했다.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및 연구 활동, 현장공원 조성활동, 캠페인 활동과 트러스트 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대응 활동 경험

경험 여부	사례수	응답율(%)
전체	10	100
있다	4	40
없다	6	60

- 3)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향후 활동 계획
 ‘있다’는 4명(40%), ‘고려해볼 수 있다’는 3명(30%), ‘없다’는 2명(20%)

이 응답했다. 활동계획이 있는 경우는 주로 제도개선 및 연구활동, 현장 공원 조성활동, 캠페인 활동, 트러스트 활동 순으로 응답했으며,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제도개선 및 연구활동, 캠페인 활동, 트러스트, 현장공원 조성활동 순으로 응답했다. 활동계획이 없는 경우는 ‘단체의 활동분야가 아니다’라는 응답이 나왔다.

표 4-5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향후 활동 계획

구분	사례수	응답율(%)
전체	10	100
있다	4	40
없다	2	20
고려해볼 수 있다	3	30
기타	1	10

- 4)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시민사회 대응활동의 중요성 및 활동분야 ‘매우그렇다’는 4명(40%), ‘그렇다’는 5명(50%), ‘보통이다’는 1명(10%) 이 응답해 중요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활동분야에 대해서는 ‘트러스트’가 8명(33%), ‘캠페인활동’이 7명(29%), ‘제도개선 및 연구활동’이 6명(25%), ‘현장공원 조성활동’은 3명(13%)이 응답해 트러스트 활동과 캠페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표 4-6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시민사회 대응활동의 중요성

구분	사례수	응답율(%)
전체	10	100
매우 그렇다	4	40
그렇다	5	50
보통이다	1	10
그렇지 않다	0	0
매우 그렇지 않다	0	0

1) 대응활동 계획 여부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활동 계획 여부에 대해 ‘있다’가 2명(29%), ‘고려해 보겠다’가 4명(57%), ‘없다’는 1명(14%)이 응답해 대응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대응 활동 계획 여부

구분	사례수	응답율(%)
전체	7	100
있다	2	29
없다	1	14
고려해보겠다	4	57

2) 대응활동 시 활동 내용에 관한 사안

대응시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캠페인 활동, 제도개선 및 연구활동, 연대 활동 순으로 응답했으며, ‘고려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연대활동 참여, 캠페인 활동, 제도개선 및 연구활동 순으로 응답했다. 참여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단체의 활동분야가 아니라는 응답이 있었다.

3)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시민사회 대응활동의 중요성 및 활동분야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시민사회 대응활동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매우그렇다’가 5명(71%), ‘그렇다’가 1명(14%), ‘보통이다’는 1명(14%)의 응답했다. 시민사회 대응활동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및 연구활동’이 7명(41%), ‘캠페인 활동’이 5명(29%), ‘현장공원 조성활동’이 4명(24%), ‘트러스트’는 1명(6%)이 응답해 제도개선 및 연구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표 4-8 시민사회 대응활동 중요성

구분	사례수	응답율(%)
전체	7	100
매우 그렇다	5	71
그렇다	1	14
보통이다	1	14
그렇지 않다	-	-
매우 그렇지 않다	-	-

2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방안 워크숍

워크숍을 통해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현안은 장기적으로 도시환경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공감대를 갖게 되었다. 또한 한 단체의 활동만으로 풀어가기 어려운 문제라는 인식을 같이 했으며, 시민사회단체 내 연대활동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현재 시민사회 내 공감대가 적어, 향후 활동을 위해 시민사회 내 공감대를 마련하는 활동의 필요성과 구체적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현장 활동을 통해 주민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실제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2.1 워크숍 개요

워크숍은 총 3차례 진행되었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현안에 대해 활동할 계획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단체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워크숍에서는 현안에 대한 공유를 통해 이해를 높이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1.1 워크숍 목적

- 2020년 도시공원 자동실효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이해를 높이고 향후 활동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한다.

- 2020년 도시공원 자동실효제에 관한 단체별 활동 계획 및 의견 수렴의 자리를 마련하고 본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212 워크숍 개요

- 1차 워크숍
 - 일시 : 2013년 12월 17일(화)
 - 장소 :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AREX-III)
 - 참가 : 전국 생명의숲 사무국장 및 도시숲담당 활동가 총 18인
 - 주요 내용 :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의 이해(개념, 현황, 제도, 문제점 중심), 주요 쟁점 및 활동방향
- 2차 워크숍
 - 일시 : 2014년 1월 16일(목)
 - 장소 : 숲센터 4층 부피에룸
 - 참가 : 공원 및 녹지 관련 시민단체 담당자 총 8명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녹색미래, (사)견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생태보전시민모임, (재)서울그린트러스트
 - 주요 내용 :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현안 소개, 향후 대응방안 논의
- 3차 워크숍
 - 일시 : 2014년 1월 27일(월)
 - 장소 : 대전충남생명의숲 사무실
 - 참가 : 전국생명의숲,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문제 대응을 위한 TFT, 광주 생명의숲, 대전충남생명의숲, 울산생명의숲, 중앙생명의숲, 춘천생명의숲
 - 주요 내용 :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대응방안 논의



그림 1 시민사회 대응방안 워크숍 모습

2.2 주요 내용

2.2.1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현안 관련 접근방법

-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은 현안 자체가 한 단체의 활동만으로 풀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자체, 중앙정부, 학계, 시민단체, 시민이 함께 논의하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 용어에서 오는 어려움과 실질적 체감의 어려움 때문에 구체적인 대상자와 사례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
- 시민단체에서 현안으로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이 위치한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함께 대안을 마련하고 찾아갈 수 있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2.2.2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시민사회 대응방안

1) 도시공원에 관한 시민네트워크 구축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현안은 장기적으로 도시환경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 단체의 활동만으로 풀어가기 어렵다. 또한 시민단체의 활동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역주민, 시민들과 함께 연대해 풀어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네트워크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장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시민단체 내 현안에 대한 이해력 향상과 공감대 형성**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관한 이해도 및 공감대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민단체 활동가 대상 학습 및 교육 시간 마련, 이해자료 제작을 통해 본 사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활동이 필요하다.

3) **시민 대상 캠페인 활동 전개**

시민대상 캠페인 활동을 통해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의 사안과 현황에 대한 이해를 높여 간다. 이를 위해 이해하기 쉬운 홍보물을 만들어야 한다.

4) **지역 중심의 활동사례 만들기**

거점공간 대상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구체적 사례를 만들고 지역여론을 형성해 간다. 특히,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을의 공유자산을 지키는 활동으로 접근한다.

5) **제도개선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활동**

장기매수협약, 장기임대계약 등 풀어갈 수 있는 방법 제안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자동실효시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연구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한다.

6)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운동**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업무는 지자체의 업무이지만, 현재 지자체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것을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운동을 전개한다.

V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방안

1. 시민사회 대응 활동 목표
2. 시민사회 대응 활동 방향
3. 시민사회 대응 활동 방안

V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방안

1 시민사회 대응 활동 배경 및 목표

2020년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의 자동실효에 따른 도시공원의 훼손 및 감소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도시공원은 도시의 환경적 가치뿐 아니라 도시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이다. 이에 도시공원이 가지는 기능과 가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현안을 알리고, 도시공원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생활 속 도시공원의 문화를 확대해야 한다.

2 시민사회 대응 활동 방향

- 생활권 도시공원 중심 운동 : 시민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 체감하고 이용하고 있는 도시공원의 중요성을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권 도시공원을 중심으로 운동을 전개한다.
- 민관협력 운동 : 공원은 공공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자체, 중앙정부, 학계, 시민단체, 시민들이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현안을 함께 풀어가도록 민관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간다.
- 지역사회 중심, 시민 스스로 만들고 지켜가는 운동 : 시민 스스로 참여를 통해 도시공원을 지키는 캠페인, 트러스트 운동이 되어야 도시공원이 가지는 기능과 가치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주민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한다.

시민사회 대응 활동 방안 제안

- 도시공원시민네트워크 조직 :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의 자동실�효는 2020년까지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집중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 문제에 대해서 중심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한 단체의 활동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연대가 필요한데, 이 연대는 시민단체뿐 아니라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단체 및 주민들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 현장중심의 실행네트워크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지역의 여론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하지만 닫힌 형태보다는 시민사회, 환경단체, 종교계, 학계, 사회적기업, 기업, 모임 등 시민 누구나 현안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형태여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 및 다양한 대안 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캠페인이 이를 위한 기반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① 기업 및 시민 나무심기

- 목적 : 나무심기 활동을 통해 도시공원의 중요성을 알림
- 추진방법 : 미집행도시공원, 녹지 지정부지 중 토지는 매입되어 있으나 조성하지 못한 곳에 나무심기 행사 진행

② 시민 대상 공원 프로그램

- 목적 : 도시공원의 중요성을 알림
- 추진방법
 - 대상 : 초·중고생, 대학생, 일반시민
 - 장소 : 서울시 내 생활권 공원(근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 내용 : 교육, 문화, 봉사활동 프로그램 구성

표 5-1 시민대상 공원프로그램 내용

구분	내용	비고
교육 활동	숲놀이, 숲체험활동 / 숲+예술교육 등	소공원/어린이공원
문화 활동	숲속 작은음악회 / 이야기 마당 등	근린공원
자원 봉사	유해식물제거/덩굴제거/물길정비 등 숲가꾸기	도시자연공원

③ Green Walk 행사(가칭) 개최

- 목적 : 생활 속 공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 도모
- 활동대상지 :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등
- 내용 : 근린공원 별 공원걷기, 공원에 관한 이야기전 등 행사, 바자회 진행

○ 시민사회단체 내 공감대 형성 :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는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우선적으로 시민단체 활동가 대상 학습 및 교육을 통해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활동가 스스로 본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간다. 세부 활동으로 시민단체 활동가 워크숍 등이 필요하다.

① 시민단체 활동가 워크숍

- 목적
 -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대한 인식향상
 - 지속가능한 도시공원을 위한 시민단체 역할 찾기 및 실행계획 수립
- 추진방법
 - 대상 : 시민환경단체 활동가(서울 소재 환경, 녹지, 도시 관련 단체 및 한국환경회의 소속 단체 대상)
 - 방법 : 워크숍

- 내용 :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관한 이해 교육, 2020년을 대비하는 시민 역할 찾아보기, 각 단체별 활동계획 세우기 등
 - 지역 중심의 활동사례 만들기 :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의 문제와 2020년 자동실효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하고, 지역중심의 활동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시민들은 현재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도시공원의 집행여부나 2020년 자동실효시 발생할 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 2020년 자동실효시 벌어질 도시의 모습은 누구도 확답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는 공원들이 2020년 자동실효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리고,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체감도를 높이는 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쉬운 홍보물을 제작해 이해를 돕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높인다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우리지역 공원알기(가칭)

- 목적 :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해제시 공원소외지역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시숲, 녹지 확충 방안 강구
 - 대상 : 서울시 자치구 중 공원소외지역 대상
 - 방법 : 이론교육, 현장실습교육으로 교육 모임 조직
 - 내용 : 지역 도시공원 정기모니터링 및 자원활동
 -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 : 2020년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자동실효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020년 자동실효에 따라 우리동네에서 매일 이용하던 공원에 건물이 들어선다면? 또는 출입금지를 당하거나 이용제한이 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

한 연구활동을 통해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도시공원이 지역사회에서 가지는 가치를 알 수 있을 것이며, 2020년 자동 실효에 따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원상황에 대한 근린공원 이용자 인식 연구, 공원소외 지역 중심으로 도시숲 확충 방안 연구 등이 필요하다.

① **공원상황에 대한 근린공원 이용자 인식 연구**

- 목적 : 근린공원의 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정도를 확인하고,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시민 참여 의사 확인
- 추진방법 : 주민, 지역단체 설문 및 인터뷰, 이용자 간담회 등
- 추진내용 :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대한 인식여부, 도시공원 조성 참여 여부 및 방법

② **공원소외 중심으로 도시숲 확충 방안 연구**

- 목적 :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해제시 공원소외지역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시숲, 녹지 확충 방안 강구
- 대상 : 서울시 자치구 중 공원소외지역 대상
- 방법 : 문헌조사, 현장조사, 주민인터뷰 등
- 내용 : 공원, 녹지에 대한 주민인식도 조사, 자투리공간, 녹지조성 공간 조사 등

VI 결론 및 정책건의

1. 결과요약
2. 정책건의

VI 결론 및 정책건의

1 결과요약

- 높은 도시화율로 인한 생활환경 악화에 따라 도심 내 생활권 도시공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판결에 따라 2020년까지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 해제될 위기를 맞게 되었다.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자동실효시 서울시민의 삶의 질 저하와 도시의 그린인프라가 붕괴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 이에 이 연구는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의 자동실효에 대한 시민사회 내 인식도를 파악하고, 기존 시민사회 내 대응사례를 조사해 시민사회 내 현황을 진단하며 향후 시민사회 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연구는 기존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대한 현황을 조사했으며, 국내 민간분야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사례조사를 통해 기존 대응 사례를 검토했다. 서울시 내 민간단체 중 공원녹지에서 활동하는 단체 대상으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하고 국토교통부, 산림청, 서울특별시 담당자를 면접조사했다.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활동계획이 있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 대상으로 3차례 워크숍을 진행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시민사회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① **서울시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현황**
서울시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집행율은 49.96%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높지만, 여전히 여의도의 7배에 달하는 면적의 도시공원이 미집행으로 남아 있다. 2020년 자동실효시 서울이라는 지역

적 특성, 근린공원의 높은 비율, 46%가 사유지임을 감안했을 때 극심한 도시숲의 훼손 및 감소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유주들에 의한 도시공원 이용 제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②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대한 국내 민간단체 대응 사례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국내 민간분야 대응사례로는 광주중앙공원시민네트워크 사례와 국가도시공원 인천민관네트워크 사례가 있다. 광주중앙공원시민네트워크는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내 특급호텔 추진 관련 현안에 대한 활동이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대응활동으로 발전된 사례이며, 국가도시공원 인천민관네트워크는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논의 중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사안이 포함되어 논의된 사례이다. 민간에서는 아직까지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사안만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례는 없지만 광주와 인천사례를 통해 지역 중심으로 접근해야 함을 알 수 있다.

③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기관면접조사

국토교통부, 산림청, 서울특별시 담당자를 면접조사 했다. 1960~70년대 공원지정 및 관리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었으나 1990년대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지자체의 업무로 이관되었다. 면접을 통해 알아보니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은 현재 업무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응이 어렵고 서울특별시는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여건과 민원 등 행정여건상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④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인식조사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단체 인식조사 결과 장기미집

행도시공원,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인지여부는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시민사회 내 대응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대응활동방법은 제도개선 및 연구활동, 캠페인, 트러스트 활동 등으로 주로 제도개선 및 연구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높게 나타났다.

⑤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방안 워크숍 결과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방안 워크숍 결과,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갖게 되었으며 시민사회단체 내 연대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시민사회 내 공감대를 높이는 활동과 구체적인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현장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주민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며 여론을 형성해가는 활동이 주요 대응방안으로 제시되었다.

⑥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방안

- 2020년까지 이 문제에 대해 중심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도시공원시민네트워크를 만든다.
-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관한 교육과 학습을 통해 이해력을 향상시키고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만들어 간다.
-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중심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간다.
-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정책건의

2.1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문제를 담당할 부서 설치 및 담당자 배치

서울시의 도시공원은 도시기반시설로 도시계획국의 시설계획과에 속해 있지만, 실제로는 푸른도시국의 공원녹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현재 분할된 체계는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대한 업무와 담당이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고 책임과 권한이 분명하지 않은 체계이다. 이에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문제를 담당할 부서와 담당자를 명확하게 지정해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2.2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네트워크 구성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은 지자체가 업무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많은 연구를 통해 다양한 해결책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제시된 해결방안 실현을 위해서는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 토지소유자, 지자체(업무에 따른 부서영역)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이해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지금까지 행정, 학계, 시민단체, 토지소유자, 이용자 등이 분산되어 논의를 진행해 왔다면, 앞으로 2020년까지 한 시적이더라도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대한 대안을 함께 마련해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대안을 모색해 갈 수 있는 민관네트워크를 운영해야 한다.

2.3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문제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 기반 구축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관한 사안은 행정만의 역할로 풀기 어렵다. 시민들의 공감대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기금모금, 트러스트 운동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시공원 문제에 시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경기개발연구원, 2004, 「도시공원의 접근성 및 주민친화성 향상방안 연구」.
- 국토연구원·(사)한국조경학회, 2010, 「저탄소녹색성장형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전략 정책연구」.
- 국토해양부, 2011,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연구」.
- 김소연, 2011, “미집행 대형 도시공원의 조성방향에 관한 연구 : 미집행상태의 광주 중앙공원의 이용현황 분석과 가치평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종준, 2013, “참여적 계획을 위한 집합적 공간의 사결정지원시스템의 개발 및 적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학위 논문.
- 부산발전연구원, 2001, 「입지 및 도시 특성에 따른 근린공원 조성방안」.
- 산림청, 2006, 「생태도시건설을 위한 도시림의 조성관리방안」.
- 서울특별시, 2011, 「미집행도시계획시설재정비계획」.
- 손용훈, 2011, “국가도시공원제도의 개념과 관리운영상의 과제”, 「대학국토·도시계획학회지」.
- 신현형, 2009,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민원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여운상·김경수·김영하, 2010, 「부산광역시 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방안」, 부산발전연구원.
- 이재성, 200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 토지의 재산권 보장 및 보유세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연·정태열, 2013, “대구 도시공원의 변천에 나타난 사회적 의미 해석”, 「한국조경학회지」.
- 임영록·김갑열, 2007,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http://www.molit.go.kr	국토교통부
http://stat.seoul.go.kr/	서울통계
http://www.kosis.kr/	국가통계포털
http://www.seoul.go.kr/	서울시청
http://www.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

부록

부록1.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인식 및 현황조사 설문지(1)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인식 및 현황조사[알고있을 경우]

(사)생명의숲국민운동은 서울연구원과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방안]연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설문은 서울시 내 환경, 공원, 녹지, 도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인식 정도와 향후 계획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서울시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대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연구수행기관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유영민 책임연구원 (02-499-6214) 최승희 연구원(02-499-6154)
--------	-------------	---

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매우 잘 알고 있다.
- 잘 알고 있다.
- 보통이다.
- 잘 모른다.
- 아주 모른다

2. 귀 단체는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 있다(문항3로 이동)
- 없다(문항4로 이동)

3. 도시공원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활동 내용을 기타에 작성해주세요) *중복응답가능

- 캠페인활동
- 제도개선 및 연구활동
- 트러스트(기금모금과 토지매입등)
- 현장공원 조성활동
- 기타()

4. 귀 단체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 있다(문항 4-1)
- 없다(문항 4-2)
- 고려해볼 수 있다(문항 4-3)
- 기타()

5-2. 시민사회 대응활동이 중요하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중복응답가능

- 민간에서 대응해야 할 활동이 아니다
- 도시공원일몰제가 되어도 문제가 아니다
- 관심없다
- 기타()

6. 기타 의견사항을 적어주세요

* 다음항목은 통계사항입니다. 단체명을 작성해 주세요.

* 단체의 주요 활동분야를 선택해 주세요

- 환경
- 도시
- 녹지
- 공원
- 기타()

* 직급을 선택해 주세요

- 사무처장
- 사무국장
- 팀장
- 기타

* 단체규모를 선택해주세요

- 5인이내
- 10인이내
- 15인이내
- 20인 이상
- 기타

* 도시공원일몰제 대응활동 관련 인터뷰 요청시 응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네
- 아니오

* 추가의견사항이 있으면 작성해 주세요.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2.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인식 및 현황조사 설문지(2)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인식 및 현황조사[모르고있을 경우]

<p>(사)생명의숲국민운동은 서울연구원과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방안]연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설문은 서울시 내 환경, 공원, 녹지, 도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인식 정도와 향후 계획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서울시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대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설문해 협조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p>		
<p>연구수행기관</p>	<p>(사)생명의숲국민운동</p>	<p>유영민 책임연구원 (02-499-6214) 최승희 연구원(02-499-6154)</p>

<p>*도시공원 : 도시지역에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p> <p>*도시계획시설 :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도로,공원, 학교 등)</p> <p>*도시계획시설부지 :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서는 부지 지정, 고시 -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 10년 이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매수 청구 - 20년 경과시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에 효력 상실 ⇒ 2020년 7월 1일 20년 이상 경과된 도시공원 일제 지정해제 : 도시공원일몰제</p> <p>*도시공원일몰제 문제 - 도시민의 여가 활동 공간의 상실 및 생활환경의 질 저하 예상 - 주거지 내 입지한 생활공원의 경우 개발 압력 상승 예상 - 도시의 자연환경파괴로 인한 생태계 네트워크 단절 우려</p>
--

1. 귀 단체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 있다(문항2로 이동)
- 고려해보겠다(문항3로 이동)
- 없다(문항4로 이동)

2. 도시공원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할 계획이 있다면, 어떤 활동을 계획할 수 있습니까?*(중복응답가능)

- 캠페인활동
- 제도개선 및 연구활동
- 트러스트(기금모금과 토지매입)
- 현장공원 조성활동
- 연대활동 참여
- 기타()

3. 고려해볼 수 있다면 어떤 활동을 고려할 수 있습니까?*중복응답가능

- 캠페인활동
- 제도개선 및 연구활동
- 트러스트(기금모금과 토지매입등)
- 현장공원 조성활동
- 연대활동참여
- 기타()

4. 없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복응답가능

- 단체의 활동분야가 아니다
- 민간에서 대응해야 할 활동이 아니다
- 기타()

5. 도시공원일몰제에 시민사회 대응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문항6이동)
- 그렇다(문항6이동)
- 보통이다(문항6이동)
- 그렇지않다(문항7이동)
- 매우 그렇지 않다(문항7이동)

6. 시민사회 대응활동이 중요하다면, 어떤 활동을 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중복응답가능

- 캠페인활동
- 제도개선및연구활동
- 트러스트(기금모금과토지매입등)
- 현장공원 조성활동
- 기타()

7. 시민사회 대응활동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중복응답가능

- 민간에서 대응해야 할 활동이 아니다
- 도시공원일몰제가 되어도 문제가 아니다
- 기타()

* 다음항목은 통계사항입니다. 단체명을 작성해 주세요.

* 단체의 주요 활동분야를 선택해 주세요

- 환경
- 도시
- 녹지
- 공원
- 기타()

* 직급을 선택해 주세요

- 사무처장
- 사무국장
- 팀장
- 기타

* 단체규모를 선택해주세요

- 5인이내
- 10인이내
- 15인이내
- 20인 이상
- 기타

* 도시공원일몰제 대응활동 관련 인터뷰 요청시 응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네
- 아니오

* 추가의견사항이 있으면 작성해 주세요.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연 2013-PR-55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방안 연구

발행인 이창현

발행일 2014년 2월 3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025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